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식래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64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1일

발 의 자 : 노식래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경영, 김경우, 김호평,
박순규, 송아량, 양민규, 오중석,
이경선, 이석주, 이승미, 이영실,
이은주, 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
조상호, 최정순, 홍성룡 의원
(1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'18.3월 전국 최초로 생활권계획을 확정·공고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이자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역할을 하고 있음.
- 그러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근거가 미약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생활권계획 관련 근거가 없어 계획수립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또한 지방분권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밀착형 계획으로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참여확대가 필요한 실정이

며, 지역생활권의 중심지육성, 생활SOC 확충 등 생활권계획을 실현하는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
- 이에 생활권계획의 수립근거 및 자치구 참여 등을 조례로 법제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생활권계획 수립·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의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함(안 제4조의2제1항 신설).
- 지역생활권과 권역생활권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4조의2제2항 신설).
- 지역생활권계획안을 구청장이 작성,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제3항 신설).
- 지역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여(안 제4조의2제4항 신설).
-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구청장이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제5항 신설).
- 생활권계획의 수립,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

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제6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생활권계획의 수립·관리)

-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.
-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, 생활SOC(생활 서비스시설) 확충방안,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, 운영 및 실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4조의2(생활권계획의 수립·관리)</p> <p>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<u>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<u>1개 이상 동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<u>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<u>지역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<u>중심지 육성방안, 생활SOC(생활서비스시설) 확충방안,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, 운영 및 실현에 <u>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